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2. 12. 1.] [관세청고시 제2022-58호, 2022. 12. 1., 일부개정.]

관세청(국제협력총괄과), 042-481-3215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개정사유
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FTA관세법 시행규칙")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
- 「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」(이하 "캄보디아와의 협정")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

◇ 주요 개정내용

-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(\$10, \$17, \$17의2)
 -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*(이하 "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")으로 지정·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·절차 마련
 - *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(제6조제1항제3호 신설, '22.7.5.)
 -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, 세관장의 심사 기준,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
-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,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(\$28, \$34, \$35, 별표3)